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 일시 : 2005년 5월 13일 (금) 14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일정표

사 회 : 박 찬 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14:00 - 14:05 개 회

14:05 - 14:10 인사말

14:10 - 14:15 참석자소개

14:15 - 15:45 발 표


이 준 행, 청소년 포털사이트 idoo.net 웹마스터
정 재 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대 서울의원
김 영 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신고등학교 교사
두 영 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남성중학교 교사
노 원 재, 참교육학부모회 상담부장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송 병 춘, 법무법인 한벗·변호사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 교 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연구사

15:45 - 15:55 휴 식

15:55 - 17:00 자유토론

목 차

☞ 학생인권 되찾기의 시작 - 두발제한폐지	1
이 준 행 (청소년 포털사이트 idoo.net 웹마스터)	
☞ 가혹한 두발규정~ 양!	21
정 재 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대 서울의원)	
☞ 두발 문제, 제도 정비를 통한 본격적 논의 출발이 필요	31
김 영 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대신고등학교 교사)	
☞ 학생 두발제한 관련에 따른 의견	41
두 영 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 남성중학교 교사)	
☞ 참교육학부모회 토론문	47
노 원 재 (참교육학부모회 상담부장)	
☞ 아직도 두발자유화가 논의되어야 하는가	61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머리모양의 자유와 그 제한의 헌법적 근거	69
송 병 춘 (법무법인 한벗 · 변호사)	
☞ 학생 두발과 인권	77
박 교 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연구사)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학생인권 되찾기의 시작 - 두발제한폐지

이 준 행 (청소년 포털사이트 idoo.net 웹마스터)

학생인권 되찾기의 시작 - 두발제한폐지

이 준 행 (청소년 포털사이트 idoo.net 웹마스터)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nocut.idoo.net

① 두발제한폐지캠페인 발생원인

5년 전, 학생, 학부모, 교사 3자간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두발규제를 완화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두발규정이 완화되고 강제이발 등 비인권적 지도행위가 사라졌습니다만,

- 캠페인을 이끌었던 청소년연대With와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간부 학생들이 모두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부터 퇴학 또는 자퇴권고를 받아야 했고,
- 일선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두발제한을 사회갈등주제로 소개, 학생인권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의 토론을 진행하게끔 하는 새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에 추가되었으며,
- 5년이 지난 현재 두발제한규정이 다시 강화되고, 머리에 구멍을 내거나, 라 이타 등으로 머리에 불을 지르거나, 속칭 고속도로를 내는 등의 강제이발 행위가 다시 등장하여 중고등학생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② 두발제한 관련 사태일지

- 3월 2일~: 신학기부터 일선학교 두발규제 강화, 강제이발 성행
일선 포털사이트, 청소년 사이트에 두발규제 항의게시물 폭주
남해중학교, 운동장에서 집단 두발단속, 강제이발 실시
- 3월 7일 : 서울 염광고등학교, 수업중 학생 강제이발
- 3월 10일 :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캠페인 사이트 nocut.idoo.net 오픈
- 3월 11일 : 경기 분당정보고등학교, 미용실습생이 전체 학생머리 이발
- 3월 25일 : 분당 대진고교, 학교 곳곳과, 스쿨버스에 'NOCUT', '인권의 공동
묘지' 등 락카 낙서시위
- 3월 27일 :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2만명 돌파
- 4월 3일 : 경기도교육청, 강제이발 금지 및 5월 4일까지 학생용의복장규정
재개정 지시
- 4월 4일 :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4만명 돌파
- 4월 5일 : '두발규제 이대로 좋은가?' 청소년 대토론회 개최 (연세대학교)
- 4월 12일 : 서울 노원고등학교, 두발단속동영상 유포 학생 징계
- 4월 17일 :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6만명 돌파
- 4월 18일 : 성남 낙생고등학교, 두발완화 담벼락 락카 시위
- 4월 28일 : 학내두발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본부 결성
- 4월 30일 : 서울 이화여대병설금란고등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동안 전교생
집단 두발단속 실시
- 5월 3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카페 및 두발제한폐지 사이트(nocut.idoo.net)
동태 파악 지시
- 5월 3일 : 부산광역시교육청, 두발규제반대캠페인 참여 금지 지시
- 5월 4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 교감회의 소집,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두발규제 반
대 집회 철저한 저지 요청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교육학부모회에 학생
집단행동 해산 요청

5월 9일 :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학생 대표단 면담

5월 14일 : 두발제한폐지를 위한 학생 거리축제 계획 중

시범 케이스로 한 명을 불러내 두들겨 팼으로서 교실을 통제하고, 선생님이
가위나 바리칸으로 직접 머리를 밀어버리며, 런닝, 속치마를 입었는지 검사한
다며 속살을 들춰보는 중·고등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은 ‘인권 선진국’을 주창
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
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한다.

유비쿼터스를 이야기하는 21세기까지도, 앞머리 3cm, 귀밑 3cm 규정이 남아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전근대적 학교, 교육기능을
상실한 교실붕괴 현장에 ‘두발제한’이 우뚝 서있다.

▶ 두발제한, 왜 인권침해인가?

학교의 억압적 현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반발을 사고, 또 법리적 문제가 가
장 많은 문제가 바로 ‘두발제한’이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생명
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권에 해당한다. 물론 신체권은 군대나 교도소와 같
은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법률적으로 전제조건이 명시되
어 있다. 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② 그것도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7월 교도소에서마저도 두발제한이 폐지된 것 역시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두발제한은 ‘불가피성’과 ‘필요최소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두발이 불량하면
행동이 삐뚤어진다’는 증명되지 않는 궤변으로 그 ‘불가피성’을 정당화시킬 수
는 없으며, ‘학생들의 머리손질시간을 줄여주겠다’는 친절한 배려 역시 그 ‘불
가피성’을 정당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앞머리 3cm, 귀밑 1cm’

식으로 모든 학생의 머리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규제방식이 필요최소한인지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를 들이대고 머리 길이를 재거나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왔는지 확인하는 쇼도 코메디이지만, 머리를 강제로 자르거나 심지어 라이터로 태우기까지 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라기보다는 범죄/폭력행위에 가깝다.

▶ 두발제한, 권위적 학생지배의 의도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고집스럽게 두발제한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우리는 군대와 교도소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이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군인과 재소자로 하여금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두발 모양과 길이를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두발규제는 군인과 수형자로 하여금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사람’임을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군대/교도소의 규율에 순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즉, 두발규제는 군대와 교도소 내에서의 억압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교도소 재소자 두발제한 제도는 법무부가 2000년 7월 폐지하였다)

우리의 학교가 학생을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상정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이다 할 수 있다. 앞으로 나란히, 경례, 교훈, 급훈, 학적부, 시간표, 표준 교과서, 운동장애국조회, 국민체조, 교련시간 등... 지금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학교의 전체주의적 군사주의적 문화는 식민지형 인간, 전쟁차출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실시되던 것들이며, 해방 후 일본군관출신 박정희의 군사독재시절 자행된 국가 병영화 과정에서 재생산된 것들이다. 즉 ‘두발제한’ 역시 학교의 병영화 과정에서 도출된 산물이며, 학생 개개인을 군사조직인 학도호국단의 충실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정착된 반 교육적, 반 인권적인 군사주의 잔재인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푸코가 말하길, 근대사회의 규율권력은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주체를 억압적 틀에 가두어버린다고 한다. 교실, 복도,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정렬시키고, 내신, 수능시험으로 일률적인 서열을 매김으로써 질서를 확

보하는 것, 불법 보충수업, 야자 등으로 정규시간표에 개입해 학생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 등은 언뜻 학생들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학생들을 학교의 억압적 주체, 권위적 피지배 객체로 만들어 내려는 적극적인 의도/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이유 역시 이와 비슷한 의도이다. 학교는 군대와 교도소처럼 학생들을 규율과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학교는 온갖 통제와 규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강제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주체가 아니라, 훈육과 통제를 당해야 하는 관리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관리주체인 학교는 관리대상인 학생에게 일정한 두발모양을 강요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주입시킨다. 획일화된 두발을 강요당한 학생들은 일종의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발자유화가 되면 학생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긴 하다. 하지만 학생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학생은 헌법상 교육청구권을 제기하는 학습권의 주체이며, 국가주의교육관은 일제 태평양전쟁과 군사독재 때에나 먹혔을 뿐, 민주화된 이 시대에서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이다.

▶ 학생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학교의 재학관계에 대한 행정법학계의 통설로서의 학생의 재학관계는 영조물 이용관계로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 주된 논지는,

① 학교 측의 공권력 행사에 근거한 권력관계(지배복종관계)가 있고 ②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명령이나 권리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③ 그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학생이 소송이 걸 수 없고, 교사의 폭력 등에 사법책임이 면제된다 - 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는 과거 나치독일의 국가주의교육관에서 도출된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 집단이 이를 받아들여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 적용하고, 해방 후 박정희 군사독재 때 다시 활용되어 대한민국의 지배적 견해를 형성한 것으로서,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쇠퇴하기 시작한 이론이다.

특히 교육법 관계에서 학생의 재학관계는 단순히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넘어서, 교육법이라는 특수법 관계에서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교육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법관계로 파악될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국가를 교육의 주체로 보아 교육을 공권력 행사로 간주하고, 학생은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종종 학생의 주체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본래의 독일 헌법 ‘Recht auf Bildung’ (교육에 관한 권리), 불어 ‘le droit a l’instruction’, 영어 ‘the right to education’을 일본이 일본어에 마땅한 표현이 없어 ‘教育を受ける權利’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라 쓴 것을 한국이 그대로 오역한 것으로서, 국가가 완성한 교육을 학생이 일방적으로 받는, 학생을 교육을 강제하기 위한 관리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으로 해석되듯, 학생 역시 학습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교육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옳다.

따라서 ‘두발자유화가 되면 학생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일부의 주장은 그 자체가 위헌이며, 폭력성을 내포한 반 교육적 주장이다. ‘아직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권을 제한해도 되고, 기성세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본래 미성년자 특수취급 자체가 여성과 함께 신체적 사회적 특성 및 처지에 따른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를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신분과는 무관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비록 학생이 미성숙하고 무능력하고 무사려하고 고집스럽다 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의 목적이 학생으로 하여금 어른이 원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인간적 성장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학생인권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은 “교육은 인격의 전면적 발달과 함께 인권과 기

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3조에서도 “교육은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충분한 발달을 지향하여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28조 2항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며 학칙에 의한 인권침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 제 29조 2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을 교육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전문에서도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라고 하고, 제 1조 (교육의 목적)에서도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고...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라고 규정하여 인간 존중,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역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함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과 인권의 최고 원리이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목적 또한 개개인의 인간존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인간 존엄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인격 주체성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은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 보장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 12조 역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함으로서 교육과정 속에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고로 ‘두발제한’과 ‘강제이발’은 국제기준과 인권조약,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 즉각 폐지되어야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군사독재자도 특하면 호헌조치를 터트리고, 민선 대통령도 2000년 인권선진국을 주창한 나라에 불법적인 ‘두발제한’과 ‘강제이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국제적 수치나 다름없다.

<참고자료>

- 규율과 복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저항: 두발제한반대운동, 홍성수, 당대비평 2000 겨울호.
-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신현직,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0.
- 학생의 인권과 학교 규정 제정 참여권, 신현직, 2000. 5.
- 참교육의 불꽃으로 『우리나라 현행 법체제상 고등학생의 권리』, 신현직, 도서출판 참, 1992.
-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활동, 신현직, 1999.
-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신현직, 고시계, 1995.9.
- 학교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임헌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
-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론, 김철용, 法政 1976.4.
- 학교 교육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반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허종렬, 憲法學研究 1999.5, 한국헌법학회.
- 학교법규상 기본적인 인권 보장제도와 과제, 고 전, 教育法學研究 1999.12.
-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김진균 정근식 강이수, 문화과학사, 1998.
- 감시와 처벌, M. Foucault, 나남출판사, 1994.

학생들의 요구사항

-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nocut.idoo.net -

1.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칙 내 인권침해규정 삭제 제를 즉각 지시하라!

교육부는 두발제한을 폐지해달라는 학생들의 민원에, 일률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획일화된 것이고 학교의 영역이라 교육부의 권한이 없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청소년들의 민원을 성의 없이 이첩해 왔었다. 그러나 각급 지방교육청들이 불법 보충수업시행이나 0교시 강제시행을 요구하며, 각급학교에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면서까지 불법 수업을 강요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이를 이중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행위 단속, 학칙 내 인권침해규정 삭제 지시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부, 교육청의 고유 지도감독권한이다.

3월 11일 인천시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학교생활규정에 반드시 넣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도감독권한이 있음에도 '안한다'는 이야기이다.

강제 이발행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규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자기 삶 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이며, 교육관련법률 및 국제협약 위반 행위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불법적인 두발규제, 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및 범죄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칙 내 인권침해규정 삭제를 즉각 지시하라.

2. 학칙에서 학생인권 침해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초·중 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법제화하라!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은 제12조에 의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며 학생인권 보장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률인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어떠한 인권 존중,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은 제28조 2항을 통해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각급 중고등학교 학칙에서 징계를 제외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초적 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라.

학생인권/기본권 제한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학생에 대한 징계 등에만 한정짓고, 그 외에는 학생회(학생자치회)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협의하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기존 법률)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법률안)

제17조 (학생인권)

-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신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보호해야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 및 학칙으로 정한다.
- ③ 학생은 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개정 법률안 제17조 3항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근거규정으로도 효력발생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9. 학칙개정절차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

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령안)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7. 학생인권보장 원칙
- 8.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9.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운영 및 보장
- 10. 학칙개정절차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 ⑦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회(학생회)의 결의 없이는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
-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 지도에 중대하고도 본질적이며, 타 학생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서는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

3.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의 자치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학생회의 학운위 참여로 학칙 개정과정 참여를 보장하라!

학생회의 소집에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학생회 심의 내용을 학교장으로 부터 검열받고, 학생회 출마 조건에 성적 자격요건과 교사 허가요건을 내걸고, 학생인권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울 수 없고, 학생회 개최 도중 학교장이 개입해 난동을 부리는 것이 오늘날의 학생회 처지이다.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학교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회의

본래 자치기능은 붕괴되고, 학교의 입맛에 맞는 선도부의 의미, 추천장 쉽게 받아 수시로 대학에 빨리 진학하는 의미 외에 학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 5조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초중등교육법 제 31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학부모, 교사, 원 지역사회인사 셋으로 한정지어버려, 학생,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 역시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학생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명문고, 명문대 진학에 혈안이 되어, 사실상 학교장의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이다, 결국 학칙은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한 자치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정권한을 학교장이 독점하여 학생들의 민주적인 학교 참여 및 생활을 학교가 마음껏 가로막고 통제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식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탄압 상황에서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측의 온갖 학칙개정을 막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를,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의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것이기도 하다.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방법,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 급식’ 등 학생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를 다루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처사이다.

독일의 경우 각 학교의 학교협의회는 물론 란트(지역)의 학교위원회(지방 교육위원회)에도 학생대표의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1986년부터 중등학교 학교관리위원회에 교직원이 2/6, 학생, 학부모, 교장 등이 1/6씩 참여토록 법제화하여 학생들이 단순히 학생자치권 수준이 아니라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15조 역시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2년 9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즉각 학생회의 자치권을 법률로 규정하여 학생 자치기구의 정상적 기능수행을 보장하고, 학생회의 학운위 참여로 학칙 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기존 법률)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법률안)

제17조 (학생인권)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보호해야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 및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학생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관련 세칙 추가 필요

구체적인 개정(안) : <http://nocut.idoo.net/campaign> 에 탑재

자료 1. 《학교 별 두발규정 자료집》

학교명	규정	단속	비고
수원 권선고등학교	3cm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5cm	3cm	전두환, 노태우 졸업
서울 환일고등학교	3cm		
수원 남수원중학교	3cm		
마산 제일고등학교	규정 없음	3cm	교사재량 단속
부산 신도고등학교	3cm		
서울 대신고등학교	7cm	3cm	
수원 수일고등학교	여 5cm (묶으면 안됨) 남 3cm	3주에 1번 공식단속 뒷머리 앞머리 구렛나루 모두 자로 재서 단속	
대전 내동중학교	3cm		
광주 동신여자중학교	귀밑 3cm, 고데기, 솔뚜껑, 층낸 머리 금지 신발 = 빨간색은 금지 / 스타킹 = 검정색 양말 = 흰색, 무늬 없어야 함, 발목양말 금지 치마 = 주머니 선까지 박아야 함 마이 = 주머니 아래가 남아야 함		1달에 1번 소지품검사
광주 송원중학교	5cm	3cm, 교과 시간 중 일부 교사 재량으로 단속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귀밑 5cm가 넘을 경우 머리를 묶어야 하고, 머리를 묶었을 때에는 15cm 이상일 경우 뒷꽂지를 모두 자른다 머리에 층을 내거나 칼머리는 금지 머리를 묶는 끈의 색깔은 검정 흰색 줄끈만 허용, 큐빅 금지		

학교명	규정	단속	비고
일산 대진고등학교	15mm (1.5cm) → 옆머리: 2cm 뒷머리: 3cm 앞머리: 눈썹		4월에 변경
서울 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앞머리 눈썹 옆머리 귀 뒷머리 칼라	교사재량으로 아무렇게나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옆머리 1cm 이상 위로 밀고 귀밑머리 1cm 이상 위로 밀고 앞머리 8cm		
서울 신일중고등학교	앞머리 눈썹 위 1cm 이내 옆머리 귀 위 3cm 이상 위로 밀고 뒷머리 아래쪽으로 약간 둥글게 양옆머리 선을 연결 윗머리 정수리 부분 3cm 이내, 기타 부분은 균형을 유지한다		
서울 경북고등학교	7cm	5cm 강제이발단속 대신 구내 이발소 운영 중	김진표 교육부총리 졸업
수원 효원고등학교	3cm	교사 손가락 굵기 기준 단속	
수원 권선고등학교	3cm		
성남 풍생고등학교	3cm		
인천 광성고등학교	앞머리 5cm 뒷머리 3cm 옆머리 1cm		
서울 한성여자중학교	뒷목 끝에서 15cm 올라온 부분까지 허용		
대구 경북고등학교	3cm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모범사례) 길이 제한 없음, 파마만 금지		
부천 상동고등학교	(모범사례) 여학생 묶어서 20cm		학생회 토론회 거침

※ 자료출처 :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캠페인 사이트 nocut.idoo.net
 '우리학교 규정고발' 게시판에서의 학생 신고 중심으로 학교별 사실 확인
 (nocut.idoo.net/rule)

자료 2.

- 2000년 10월 이후부터는 『단위 학교별로 교사·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의 자율화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지도방법 등을 정하되..』 - 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주장에 대한 일선 학교 실제 적용사례

■ 구미 형곡중학교

3월달 대의원회의때 두발 문제에 대한 주제로 회의를 했는데, 학생들은 분명히 예전과 같은 두발 규정을 원했고, 단지 지키지 않는 학생들만 단속을 하자는 의견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지도했던 학생부장 선생님께서도 ‘머리 규제는 반대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일주일 후.. 여학생은 옷깃에 머리가 닿지 않게 남학생은 짧은 스포츠 형 머리로 깎으라는 명령 아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학생회에서 결의 된 내용을 올린 족족 묵살하고 학생들과는 대화조차 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교장선생님, 진짜 너무합니다. 이러면 학생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한 달에 한번 50명이라는 대의원들이 한 시간 동안 수업도 듣지 못하고 회의하는데, 회의를 해도 결과가 이러면 어찌라는 겁니까. 차라리 대의원회의 열지 말고 교장선생님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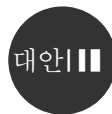
<http://www.idoo.net/?menu=nocut&sub=rule&mode=read&no=2008>

■ 서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앞머리를 덮지 않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칼라를 덮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와서 머리 검사를 하는데 엄격하게 한다면서, 선생님들 마음대로 학생 한명 뽑아서 그 친구 외모로 기준을 정하고 감으로 적발하더군요.

<http://www.idoo.net/?menu=nocut&sub=rule&mode=read&no=959>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가혹한 두발규정~ 양!

정재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대 서울의원)

가혹한 두발규정~ 앙!

정 재 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대 서울의원)

두발규정이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두발단속을 할 때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모여서 어떻게 단속을 피할지 궁리를 한다. 그러나 결국엔 단속에 걸려 방과 후 미용실로 직행이다. 다음날 두발검사를 다시 받으러 학생부로 간다. 운 좋으면 통과되고 운 나쁘면 통과하지 못한다. 학생부 문을 나오는 순간 희비가 엇갈리고 만감이 교차한다. 대체 두발규정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두발규정의 문제점은?>

▶ 두발규정은 현대판 주홍글씨!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분명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차별받고 있다. 두발상태를 보고 학생인지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학교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학생신분임을 드러내기 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의 간접적 감시를 받게 하여 공부 외의 것을 할 때 제약 또는 불이익을 주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헌법내용에 위배되므로 두발제한은 옳지 않다.

▶ 과거사의 잔재이다!

두발규제는 일제시대 때 생겨난 것이다. 불순한 의도로 생긴 두발규제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과거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전체주의를 표방하며 두발규정이 시행되었었다.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국민들을 통제해야만 했다. 그러기위해서 모든 똑같은 획일성을 강조하였다. 학생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그 결과 이 당시에 두발규정이 시행되었다. 21c는 지식정보사회이고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자원인 시대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모두가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 발전을 저해한다. 이것은 곧 국가경쟁력약화와도 연관된다. 시대가 변하였는데도 과거의 잔재를 계속 남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두발제한에 대해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점이다. 실제로 두발에 타인이 강제적으로 손을 대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과연 두발규정이 인권을 보장한 헌법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을까? 규정은 말 그대로 규정이다. 무언가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그 행위가 바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은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사회는 창의적 인간이 가장 훌륭한 자원인 시대이다. 무언가에 구속받은 상태에서 인간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다. 학생들의 성적이 정말 좋기를 바란다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다뤄진 내용이기애 이쯤에서 내용을 끝낸다.

<두발단속시의 문제점은?>

▶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두발을 단속한다!

실제로 학교교칙을 보면 어이없어 황당할 때가 있다. 두발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제한 길이와 실제 두발상태와의 괴리가 올 때가 있다. 필자의 경험담을 예로 들어보자. 필자가 다니던 학교의 규정은 앞머리 15cm까지에 눈썹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근처에 자가 있다면 한번 머리카락에 대고 길이를 재 보라. 앞머리가 15cm이면 눈썹을 넘고도 한참 남는다! 그런데 규정엔 분명히 앞머리 15cm까지 기를 수 있다고 한다.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앞머리를 15cm까지 기르란 말인가? 기르지 말란 말인가? 이러한 경우의 예를 한 가지 더 제시하겠다.

- 서울 상문고 -

제18조 【용의사항】 ①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학생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8cm까지 이며 눈을 가려서는 안 되고 옆머리, 뒷머리는 정수리까지 올려 정발한다.

이 경우도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다.

머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곱슬머리, 반곱슬머리, 생머리 등등... 곱슬머리의 경우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매우 길게 보인다. 규정상으로 보면 충분히 규정안에 드는 길이이지만 선생님들의 눈엔 길어 보인다는 이유로 적발한다. 물론 개개인의 머리 특성에 맞춰 하나씩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획일적인 규정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선생님들의 주관으로 단속한다!

두발단속을 할 때는 분명히 두발규정에 의거하여 단속해야한다. 그러나 단속을 할 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의 커다란 두 눈동자와 두뇌만 있

을 뿐이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 온 후 교실을 한바퀴 돌면서 스포츠형태의 머리카락이나 희게 파여진 부분이 있는 머리를 제외한 모든 머리는 단속에 걸린다. 아무리 규정길이 이내에 들었다 해도 상관없다. 오로지 선생님의 주관적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또다시 필자의 사례를 들어보자.

때는 2004년 가을 서울소재 00학교 3-12반. 그날 학교에서는 두발검사를 하였다.

필자의 머리가 길어서 걸렸다. 필자를 이렇게 ‘항변’했다.

필자: 선생님. 제 머리는 학교 규정상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데요? 학교규정에는 분명 15c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는 앞, 뒤, 옆 어디를 재봐도 15cm를 넘는 곳 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 머리를 봐라. 어디가 단정한지...

필자: 그치만 분명 규정상 정해진 길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로 할때 들어라~!!

그렇다. 두발단속 시에 필요한 것은 규정이 아니라 선생님의 두 눈뿐이었다. 필자가 다닌 학교의 두발규정은 필자가 입학하기 전 학생회와 선생님이 모여서 만든 규정이다.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된 민주적인 규정이다. 그러나 규정으로만 민주적일 뿐 단속 시엔 선생의 권위가 규정위에 존재한다. 선생님의 두 눈이 곧 규정이고 단속의 잣대이다. 사실상 두발규정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 두발규정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각 학교의 두발규정이 어떠한지 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 약30여개의 학교 사이트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 중 두발관련규정이 공개되어있는 학교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아예 학생지도관련 규정을 공개조차 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다. 학생들에게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해놓고선 대체 무엇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학교규정의 비공개는 결

국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가 어떠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발된 지도 모른 채 무조건 두발을 잘라야 한다. 학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상이라도 반드시 학교 교칙을 공개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 법을 모르고는 살 수 없듯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 교칙조차 모르고 지낼 수는 없다.

<두발규정의 교육적 필요성은?>

두발을 규제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학교가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란 인성교육을 통해 성숙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 일일까? 학생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학교가 헌법을 안 지키는데 학교에서 무얼 배우겠나..”

두발을 짧게 함으로써 정신자세를 가다듬는다.

과연 그럴까?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전교생의 정신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모두에게 똑같은 머리모양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과거군사독재시절의 문화나 다름없다. 7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독창적, 창의적 인간 육성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왜 똑같은 머리를 요구하는가? 과연 지금 7차 교육과정이 진행 중인 것이 맞는가? 7차 교육과정의 목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뭐 하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육적필요성과 교육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자율화를 통해 스스로의 표현력을 기르고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더 교육적이지 않은가? 남에게 규제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해

서 행동하는 것이 더 교육적일 것이다.

<두발규정의 개선방향은?>

▶ 두발규정 제정시 전교학생의 참여를 바탕으로 제정한다.

두발규정을 제정할 때 각 학급에서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다. 그 방안들을 수집하여 학생회 대표와 임원, 학부모회, 교사대표, 교장 & 교감선생님이 다함께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장 좋은 방안을 토론을 통해 협의를 본 뒤 총 학생투표를 거쳐서 제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생활의 기본인 토론을 배우고,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배움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누리고, 두발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도 원만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밀실규정이 아닌 열린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학생&선생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면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두발규정에 동의를 할 것이다.

▶ 두발규정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것 또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두발규정을 완전자유화 할 것인가, 아니면 대폭 완화를 할 것인가. 현재 한국 사회의 분위기나 정서상 완전 자유화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직까지 학생들의 염색이나 퍼머 등에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두발규정을 완화해 나가야한다. 예를 들어 “길이는 자유화 하되 염색과 퍼머는 금지한다”와 같은 범위를 설정하여 두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나가 궁극적으로 두발자유화를 이뤄야 한다.

지금까지 두발규제의 근본적 문제점과 두발단속시의 문제점, 교육적필요성,

개선방향을 논의해봤다. 두발규정은 분명 인권을 제한하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인간중심의 사회다. 산업화시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인간이 이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해 가는 시대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구시대적 유물인 두발규제를 폐지하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제 학생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자. 자유로운 환경 조성의 가장 첫 출발점이 바로 두발자유화다!

두발 문제, 제도 정비를 통한 본격적 논의 출발이 필요

김영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대신고등학교 교사)

두발 문제, 제도 정비를 통한 본격적 논의 출발이 필요

김 영 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대신고등학교 교사)

두발 문제와 관련한 논의의 장에서 교사는 솔직히 괴롭다.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일진회’로 요약되는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은 교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분위기에 고무된 것일까 여겨져서 용의복장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두발문제가.

두발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학생생활지도 문제의 중심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포츠 머리도 건방지다고 여겨지던 70년대를 지나 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단행된 교복 자유화(?) 바람에 힘입어 급작스럽게 다가온 머리 기르기는 별 탈 없이 정착되었다. 이후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교복 입히기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단정한 두발이 요구되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2000년 학생들은 거리로 나서 두발 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절박함에 비해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은 또 흘러갔다. 그러나 얼음장 밑으로 물은 계속 흐르듯이 2005년 두발 규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요구는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교육적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1. 두발 문제,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

앞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시절의 두발 관련 규정의 변화에 대해 간략한 말씀을 드린 것은 두발 문제가 어떤 절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각각 다른 논리로 두발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어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다. 저는 삭발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2학년 때부터 교복 자율화와 머리 기르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교 교사로 발령 받은 93년, 여전히 학생들은 사복에 머리를 자연스럽게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교복 입히기 바람이 불더니 교복에 걸맞는 두발을 요구하는 흐름이 단숨에 형성되었다. 이런 숨막히는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두발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복을 입는 순간 소위 통일된 제복에 걸맞는 통일된 두발 규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복을 입는 순간 학생들의 두발은 자연스럽게 기르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결국 두발 관련 문제가 단순히 두발만의 문제가 아닌 교복, 학교 생활 규정 전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규제와 자율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도 요즘에는 교복을 입으면서도 두발 규정이 완화된 학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학교가 시대적 변화 흐름을 외면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2. 정해진 결론의 강요가 아닌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집중하기

두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학생들의 두발 자율화(자유화) 요구는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두발 규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서로 자기의 의견이 모두 옳으니 자신의 의견만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

출 과정이라는 것이 두발 문제 관련 당사자들이 동등한 테이블에 앉아서 지속적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인데 이 과정 자체가 서로에게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두발 규정 개정 못지않게 이러한 사회적 경험을 축적해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조직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두발 관련 규제가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자유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연장선상에서 교복 역시 학생들의 개성을 죽이고 획일적 학교 문화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당장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복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교복이 편하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학교 올 때 입을 옷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는 것이다. 편리함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지만 편리함도 학생들의 상황 판단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기준 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교복을 맞추되 학교가 정한 몇몇 날에만 반드시 교복을 입고 다른 날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교복과 사복을 마음대로 입는 방안, 교복이 아니라 색상과 형태 정도만 정해주고 학생들이 알아서 옷을 갖춰 입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다. 두발 규정 문제 역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당사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정리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기본권적 관점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정하기

사회적 논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맥락도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중구난방으로 해 나갈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두발 규정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차원의 교육목적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발 규정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본권의

개념은 사회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해석,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시대에 학생들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부분이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면 학교역시 당연히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생활지도 규정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기본권의 개념을 헌법과 교육법의 법적 조항으로부터 명백히 정리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국제적 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91년도에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은 헌법(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 1월에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에 대한 2차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학교교육에서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를 즉시 시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UN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였고, 체벌 폐지, 학생들의 자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두발·용의 복장규정의 시정,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자기 결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UN조차 두발·용의 복장 규정의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에서는 학생들의 두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봐서 UN의 시정 권고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마련에 나서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동안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교사는 언제나 학생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권력행사자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러한 구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95년 5.31 개혁안 발표 이후 조성된 교육개조(교육개혁?) 국면에서 교사들의 교육적 권위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권위주의 시대의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 교육에서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문제는 매우 필요한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이지만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권위마저 흔들리게 되어 교사들은 학교교육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시대 교사들의 학생 지도 수단이었던 체벌과 처벌, 그리고 성적은 이제 더 이상 학생 지도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학생 지도의 방안 내지는 수단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학생생활규정을 정교하게 손보는 일은 학생보다 교사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우리가 모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유급제도 등 학생들의 책임을 묻는 교육적 조치가 우리에게는 없다. 학업,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수업일수만 모자라지 않으면 상급학년, 상급학교로 진급, 진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사들은 제도적으로 무기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로지 아직도 약발이 남아있는 것이 대학입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최근 한 일간지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고 있다. 일반화된 현상은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교사 학생 관계의 변화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느끼고 있고 당혹해 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던 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이겠지만 교사의 교육권적 측면에서 교사 학생 관계의 재정립 문제는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두발 규정 역시 교사와 학생의 관계성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두발 관련 학교 생활규정은 교육부의 거듭된 원칙 표명에도 불구하고 학교내에서 구성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고 합의하여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 역시 기본권적 인권,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학교내 구성원들의 합의 과정이라는 절차가 그동안 계속 권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되고 있지 못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다. 교육부는 여전히 학교내 구성원들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학교 생활규정 마련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의 수직적 권력 관계만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대등한 논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여러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대표성, 권한 등이 정리되어야 한다. 교장과 교사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틀을 통해 일정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학운위 위원으로 참석 할 수도 없고 학생회 역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결국 학생회 법제화, 학운위 학생참여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위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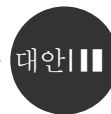
일정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학교내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위한 논의가 비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에 다시 불거진 두발규제 개정과 관련된 논의과정을 통해 학교 내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는 제도 정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좀 더 대등한 권력관계가 만들어지고 논의 구조가 구축되면 학교 생활규정의 내용 마련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규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한 기본권적 인권과 국제 규범에 걸맞는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두발 단속 과정의 문제

두발 단속 과정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학생들이 느끼기에 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두발 단속, 강제로 머리 깎기 등의 비인격적 생활 지도 방식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와 교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교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교사들의 각성 여부에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생활지도 방식에 동의할 때 비로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서로간의 마찰은 제도와 규정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태반이다. 두발 단속 과정 역시 교사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임의적 행동이 학생들에게 큰 불신과 불만을 낳고 있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가 명시된 생활지도 규정 내지는 지침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된다면 불필요한 마찰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가르침과 생활지도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것은 연수나 교육 등을 통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부분이며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학교 생활규정상에 두발 지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된 학교 생활지도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물론 학교 생활지도 규정 역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 논의를 거쳐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부

차원에서 일종의 준칙이 될 수 있는 예시안을 제시하는 것도 단위학교의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학생들은 강압적인 두발 단속을 인격적 모독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철저해야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 몰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분출하는 분노를 가정에서는 받아들이면서도 학교가 생활지도를 철저히 해서 자녀가 대학 진학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강압적 생활지도의 이면에는 암묵적인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최근에는 학교의 강압적 생활지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부모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대세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생활지도를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역시 학생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사회적으로 함께 보살피고 성장시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자기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이라는 측면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다. 학생들의 학교 안 생활, 학교 밖 생활은 생각보다 매우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강압적 생활지도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무차별적 경쟁 입시 교육의 존재에 대해, 비민주적 학교 행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바뀌어나가려는 총체적 노력이 함께 할 때만이 두발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들이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학생 두발제한 관련에 따른 의견

두영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남성중학교 교사)

학생 두발제한 관련에 따른 의견

두 영 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 남성중학교 교사)

1. 두발제한의 인권침해성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규정 중 두발제한 관련부분을 굳이 확대 해석하여 인권침해라고 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두발 단속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퍼머, 염색, 단정치 못한 긴 머리 등은 교내 생활지도규정(학부모, 교사, 학생대표가 함께 만든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인권침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다만 지도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화지도가 필요하다.

강제적인 삭발 및 가위로 무제한 자르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학생을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문란한 사회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의 욕구와 자유를 무조건 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교육에서의 전인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두발제한의 교육적 필요성

학생들 중에는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가치관이 형성

되기도 전에 외모에만 치중하는 단순함에 빠지게 된다. 책보다는 TV 등 각종 매스컴에 의한 모방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단정함보다는 무절제한 성인의 모습을 추구하여 비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그 원인은 두발과 복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단정한 용모는 예의범절 및 질서의식에 바람직하며 학생다운 교외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무제한적 두발자유화는 기본생활습관의 태도가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조교제에도 일조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적절한 두발 제한은 사회적 일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유해업소 출입 억제책이나 술과 담배 구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지게 된다. 외모도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에 부응해야 한다. 외모의 지나친 관심은 학업에 소홀하기 쉽게 된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자칫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두발제한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며, 분명한 것은 학생들은 외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회 속에는 법규와 규범이 있듯이 학교라는 예비 사회집단에서 규정을 지키고, 모두에게 공평한 규정을 적용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은 사회인을 길러내는 인성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자율적인 두발을 허용할 경우 갖가지 두발 형태는 한없이 무질서해지고 이는 곧 무질서한 ‘내 마음대로식’의 생활태도로 전이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을 더욱 더 가치 있게 가꾸도록 교육적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은 교육자의 위치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 두발단속 방식의 문제

요즘 이발 기구를 들고 강압적으로 두발 단속을 하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사가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마다 생활지도 규정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

교마다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발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라면 훈화식의 지도를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수차례 학생스스로 이발하도록 지도하고 별점 카드에 기록하는 등 자율성을 주지만 학생 스스로 자발적으로 단정한 두발을 유지하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로 인해 두발단속과정 중학생과 교사 간에 마찰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훈화식의 교육적 지도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교사의 지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물론 강압적인 두발단속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하는 교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학생들도 혼돈을 가져온다. 따라서 객관화된 규율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교-담임-학부모의 연계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의 신체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도 문제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신체적 특수성이 있는 학생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지도해야 하며 과도한 처벌은 없어야 한다.

4. 두발관련 학교생활규정의 문제

학교마다 규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정 적용은 어렵다. 다만 시대와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자발적인 참여로 규정을 개정한다면 개선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직원회의에서는 두발을 규제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학생회 및 학생들은 100% 두발 자율화를 요구할 것이 뻔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인 충분한 시간과 발상이 필요하다. 학생-교사-학부모가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규정을 정하고 시대와 현실을 고려한 생활규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규정의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준수되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생활지도규정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가 상용되어야 한다.

5. 개선방안(두발제한의 전면적 폐지 또는 단속방식의 개선 여부)

전면적 폐지라는 것은 너무나도 획일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다만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인식 전환이 필요시 된다. 현재로서는 전면적 폐지보다는 규정을 개정하고 단속방식도 개선하여야 할 시점이다. 학교마다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규정의 준수는 곧 질서를 의미한다. 강제적 단속보다는 충분한 사전 지도를 통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체벌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고 훈화지도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생활지도교사만 단속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학급 담임 및 학부모와의 연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획일적인 치수와 모양보다는 자신의 외형에 맞는 단정한 두발을 권장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생활 이외에 기타 활동(연예인, 예능계통 특기자 등)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예외적인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대다수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모보다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신분에 맞는 두발 형태를 하도록 권장하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단속의 범위를 교사와 학생이 상호 토론하여 정하고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지도하는 방식도 상당한 개선책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현재 두발자율화를 실시하는 학교, 추후 두발지도가 가능한 학생, 교사나 학부모의 두발지도가 불가능한 학생 등으로 단속방식을 분류하여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참교육학부모회 토론회

노원재 (참교육학부모회 상담부장)

참교육학부모회 토론편

노 원 재 (참교육학부모회 상담부장)

I. 두발제한 문제 상담사례

사례1)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있는 00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그만큼 후회도 했습니다. 철이 없을때 자퇴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1년 있다가 복학해서 시골학교로 전학갔습니다. 역시 확실히 다르더군요.. 선생님들도 부모님들같고.. 담배 피는거 아시는데도 덮어주시구, 오히려 좋은 말씀으로 인도해주셨어요. 그러다보니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중략..... 그래서 00동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첫날에는 커피색 스타킹을 신고 갔습니다.. 선생님께서(남자)저를 부르시더군요.. 스타킹이 뭐냐고 하시구요 머리로 경고해서 안 잘르면 가위 들고 자른다고 자기는 끝가지 가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전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봐주더라구요,, 첫날에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제머리가 어깨에 닿지도 않는 짧은 머리입니다.. 둘째날에도 어김없이 걸렸죠,, 머리 안잘랐다고.. 저는 억울했어요,, 솔직히 저 보다 다른애들은 머리가 다 길거든요?? 저만 잡으니....

저쪽으로 가서 서있으래요,, 교문앞에요.. 서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반사적으로 에이씨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남자였습니다..)돌아보시더니 눈이 커지면서 "에이씨?"이러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 갑자기 머리가 멍하더군요 ,, 뺨도 얼얼하면서..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창피한걸 싫어합니다.. 제가 맞은곳은 교문앞이었습니다.. 그것도 남녀공학인 학교..등교시라서 애들도 굉장히 많았죠.. 따라오래요 .. 그래서 전 따라갔죠..

"빨리못와"하시면서 뒷통수를 때리시더라구요..정말 창피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따라갔고, 교무실에서 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저를 비하하더군요.. 부모님을 부르시겠다. 이런저런 말이 오갔고, 저는 엄마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보며 구경을하고 있었는데 짧은 남자 선생님께서 애들을 두꺼운 몽둥이로 때리더군요 ..머리 때문인가 봐요.... 중략...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학교다니기 싫습니다..그정도로 학교 다니기 싫은 기분을 아세요?? 모르실겁니다..몇분정도는 계시겠죠.. 다른고민들도 많아서 머리가 터집니다.. ㅎㅎ

솔직히 말하면 자살시도를 몇번 해본적이 있어요.. 손목도 그어 봤고..ㅎㅎ 이 세상에는 저를 이해해주실분 없으실꺼예요.. 저희 가족도 이해 못하는데 .. 머리가 터질것같은 스트레스 받아보신적있는지요??

전 맨날 그래요.. 휴..... 지금쯤이면 제가 어떡해 돼 있을까요?? ㅎㅎ

자살도 몇 번째인지 ...은근히 쾌감도 즐깁니다.. ㅎㅎ 정신병자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정말 이 세상에서는 저를 이해해 주실 분이 한 분정도는 계시음 좋겠어요..

사례 2) 전 학부모가 아닌 현재 진주시 00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부모 보다 직접 겪고 있는 학생들의 글이 가끔은 더 정확한 상황을 알려

드릴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메일을 열심히 신중히 써서 보내려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해 강압적인 방식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조리한 대우 때문입니다. 특히 두발 문제에 대해서 엄연히 정해져있는 고등학교 규정을 두고 선생님들이 직접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두발을 강제로 직접 자르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분명 저희학교 규정은 앞머리는 눈썹을 넘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만 닿지 않는다면 자유형이라고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선생님께서는 그 규정을 지킨 학생들의 머리까지 강제로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분명 규정이 정해져있었는데 선생님이 판단하고 길다고 자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은 힘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날 그 광경을 지켜보고 따지기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며칠 전날까지만 해도 학교 게시판에 올려져있던 학교규정에 관한 글은 온데 간 데 없이 삭제되고 없더군요.

정말 허탈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짜고 한 행동일수도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화 민주화를 외치고 계시지만 그 민주화라는 범위는 학생에겐 해당하지 않는가 보더군요.

선생님들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처럼 조금만 성격이 예민하고 누구에게 간섭 받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자살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 어제까지만 해도 동맥을 직접 끊을까 약물로 자살을 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을 택하는 건 자기 자신을 못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학교 교육방침 교육상황 그리고 선생님 이런 존재들로 인해 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현재의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 들지도 않겠죠. 어른들은 학생을 무조건 공부만 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1세기 선진국을 외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선 사회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존재이고 하찮게 보일지도 모르는 존재인 학생들의 자유도 존중이 되어야하고 학생들 편의 민주화도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분명 학교 규정엔 맞게 행동하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니라고 하면 어쩌란 거죠? 고등학생이면 한창 외모에도 관심이 많을 나이입니다. 거기다 오늘 개학식에서 보니까 머리를 강제로 자르게 시키더군요. 물리적 처벌이 들어간다고 하면서요.

이게 학교입니까 ? 요즘 교도소 아니 군대도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국에서 학교에 다녀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점점 뒤쳐지는 건 개방적이지 않은 학교 때문이죠.

이런 것쯤 어떻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 친구들도 아니 저희학교의 모든 학생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건 억지로 해도 되지만 두발자유 만큼은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은 인생을 즐길 걸 다 즐기고 마치 학생들을 체벌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학교에서 담배를 피지 않나... 학생은 그것을 어디로 분출해 내야하나요? 자기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어서 표현해야하나요? 제 친구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외치지 않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게 올바른 길이라면 누군가 한 명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뀐다고 생각하고 메일로 보냅니다.

학생들을 좀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두발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많은 학생들이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직접 제 목숨을 끊어서 이런 형편없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바뀐다면 직접 목숨을 끊으려고도 생각했습니다.

학교 때문에 우울증 걸린 학생들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학교만 가면 짜증이 나지만 억지로 다니는 학생도 많죠.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 할 수 있도록 두발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에게 아무 힘도 권한도 없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생활해야하죠. 저희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례3) '우리를 가두는 생활규정, 우리를 열어주는 생활규정'...

(학생인권간담회 2004년 11월. 박솔잎)

[학생의 인권?]

(1) 우리의 옷을 돌려달라!

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불쾌감, 즉 인권 침해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장규정이다. 나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이 기억난다.

[복장]

-여자: 학교교복. 무채색 계통의 양말. 머리는 귀밑 3cm으로 단발형. 염색/무스는 금지. 화려한 색깔의 머리 끈, 핀 등을 금지. 그 외 학생다운 복장

내가 신을 양말색깔까지 정하고, 머리스타일 까지 정해놓았다. 그리고 도 대체 '학생다운' 복장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당시 나는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것과 새로 입은 교복(내가 입어본 첫 정장이었다)에 들떠서 그다지 이런 사항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중학교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한 2학년 1학기 무렵, 난 이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학교의 아침에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학생다운’ 복장을 입지 않은 ‘학생답지 않은’ 복장의 학생들이 교문 근처에 주욱 서있다. 그리고 그 곳에는 회초리를 들고 팔짱을 끼신 엄한 학생부장 선생님이 있기 마련이었다. 우리는 아침에 옷을 고를 권한도 잃어버리고 소속 학교와 이름을 옷에 단 채 본인도 원치 않아도 공개하면서 돌아다녀야 했다.(이름이 좀 특이한 아이들에겐 이 건 완전 교문이다.) 학교는 왜 그리도 우중충한 색을 좋아한 건지, 어느 학교라도 멀리서 교문을 바라보면 모두 어두운 색의(그나마 밝은 색의 교복이 ‘적갈색’ 교복이다) 옷을 입고 졸린 눈을 비비며 느릿느릿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 마치 장례식 행렬을 보는 듯 하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과 머리스타일을 하는 것조차 막는 복장 규제.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가장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인권침해가 아닐까 한다.

II. 학생생활규정안의 문제점

학교는 머리 길이 또는 어떤 장신구가 타 학생에 대한 안전, 수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처벌의 압력을 통해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타당한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학생들로부터 도덕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용의복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통제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하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욕적 언사, 강제적인 머리깎기, 소지품 검사와 속옷 검사 등의 관행은 그 산물일 것

입니다.

이런 관행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10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제12조, 사생활의 비밀을 가질 자유 제17조 등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제16조, 청소년의 존엄성과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8조 2항,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제29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7조 등 제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실현 방법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엄격한 규율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큼니다. 학생들의 개성적인 옷차림과 머리모양,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용적인 시선과 수용적인 자세를 거세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용의 규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인격도야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학생들을 규격화, 표준화함으로써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획일화하려는 의도로 탈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머리모양과 복장 등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양식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제14조 【용의복장】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3.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학생의 두발은 별도로 정한다.
7.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정결을 유지한다.

★ 4, 5, 6호의 규정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바, 학생스스로가 그들의 규정을 만들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함. 따라서 4, 5, 6호의 규정은 신발, 가방, 두발, 기타(악세서리 등) 용의 복장의 규정은 학생회의 민주적의견 수렴을 통하여 학생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를 수정 보완한다.

(2004년 광주지부 학생생활규정안 공청회 자료집)

[생활규정안의 무리한 적용]

1차 적발	2차 징계	3차 징계
용의복장/두발불량/학생답지 않다/태도불량/지도따르지 않음 [강제적자르기 바리깡, 가위사용, 교복압수]	강압적인 체벌 폭력적 상해 교문, 교무실에서 무릎꿇기 반성문 쓰기 부모님 소환 교내봉사활동 교내 별점(-)	자퇴권고 자퇴예고서 작성강요 전학 강요

1차 심리적 외상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심리사회적 장애발생	개인적, 사회적 병리현상
무력감, 우울감 무력감, 무가치감 무망감, 좌절감 수치감, 모멸감 실망감, 자아손상감	1차 증상의 반복발생 현실적지각력 후퇴 현실적응문제 발생 외부와의 고립감 집단에서 소외됨	정상적 심리사회 적응 수치 이탈 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현실도피(가출, 일탈) 심리사회적 공격성 표출(청소년 비행, 절도, 본드, 집단폭력)	개인심리적 분열 자해(동맥긋기, 약먹기, 유서쓰기) 자살유사행동 비이성적, 비사회적행동 (엽기적 행위) 내적, 외적 와해현상 자살충동 자살감행

Ⅲ. 두발제한 문제의 사회문화적 원인 발생

1. 사회적 역할모델의 변화

사춘기 이후 아동의 의존적 사고나 가치관에서 탈피하고 심리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진다. 청소년기에 또래집단 동조나 동일시를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에 10대 대중문화 스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 1990년대 중후반 가요계의 10대 여고생 스타가 대중문화 전면에 부상함 (SES, 핑클...)
- * 2000년대 대중문화 스타의 주류로 등장함 (보아, 동방신기, 문근영, 장근석, 강소영)
- * 학생연예인들의 교외 특기활동 인정(일산 D고 - 김소연, 이혜련, up의 박상후, 이정희)

2. 학생, 청소년의 사회적 창업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학생, 청소년층의 등장(하자센터 직업센터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진출을 시도함.

학생신분이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등장함.

- * 인터넷 창업/ 인터넷 software 개발
- * 인터넷 아이템 개발 / 소호사업

3. 신인류 디지털 세대의 문화적 충격

인터넷 등으로 이미 개방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고, 외국생활을 통해 한국학교 생활과 문화에 심한 거부감과 이질감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의 홍수, 범람으로 시대, 지역, 문화, 국가 등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상태에서 학교의 경직되고, 획일적 징계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심리적 분출이 억압되어 인터넷 ID로 의견을 제시함.

4. 다원화된 가치, 개인적의 가치의 확대

획일화된 집단가치에 동조할 필연성을 느끼지 못하고 유연하고 다원화된 사고체계를 동경하고 개인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둔다.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사고의 힘이 약하고 디지털(비트)의 분절적인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대 중심(여피족, 덩크족, 나홀로족, 웰빙족..)의 주류문화에서는 집단적 가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동호회 모임이나 독특한 생활양식에 의한 문화적 모임이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된다.

불변하는 사회적 가치나 규율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며 유동적이고 개인적 가치를 존중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지향한다. 조직화되고 경직된 사고체계 보다는 자기 주도적이며 자기 충족적인 방향으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IV. 결론 -인권침해 요소 삭제 및 학생자치의 완전한 실현

[두발규제로 인한 징계를 철회하고 억압적인 선도규정안 학칙 수립]

두발규제, 용의복장 검사,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는 구시대적인 학교의 구조

적이고 경직된 획일화된 학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있다.

첫째, 학교내에 민주적인 상호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칙을 수립하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생회측과 교사측의 양방향 의견수렴으로 인한 합의된 공통의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수직적이고 통제 일변도인 학칙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구조조차 막혀있다.

둘째,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의 토론회를 거쳐 공식적인 합의에 의한 민주적인 선도규정안을 제정해야 한다.

[논란- 허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1. 파마 / 염색/ 가발/ 삭발/ 피어싱
2. 힙합 레게 머리(이효리 스타일 - 애니콜 CF)
3. 핑키 스타일(락 스타 -)
4. 일본 신주꾸 청소년 스타일(만화모방, H.O.T 문희준, 동방신기 스타일)
5. 미국 갱스터 스타일(문신머리, 부분삭발 - 저항의 표시로 일반인과 구별됨)
6. 유럽 스타일(베컴 스타일, 풍지 머리)



아직도 두발자유화가 논의되어야 하는가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아직도 두발자유화가 논의되어야 하는가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이미 80년대 초 중·고등학생의 두발과 복장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내가 직접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세대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유로운 머리 스타일과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의 자유로움을 만끽했었다. 그러나 언제인가부터 학교는 학생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학부모는 지나친 외모 꾸미기 때문에 아이의 공부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학생은 옷차림에서 느끼는 빈부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 등 처음 복장 및 두발자유화가 의도했던 교육적인 효과 즉,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와 자율적인 생활을 학생들에게 찾아주자는 의도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자율적(?)으로 교복으로 회귀되더니 두발 역시 교복과 어울리는 단정한 머리스타일을 유지하라는 규제가 시작되었다. 2000년에 이어 2005년, 학생들이 다시 두발자유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나는 20년도 훨씬 전에 이미 한번 사회적 합의를 보았고, 5년 전에 다시 한번 다져졌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이렇게 또 새삼스럽게 나오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두발규정의 자율적 결정의 함정

2000년 10월 중고교생들이 두발규제를 폐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자 교육당국은 단위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의해 학생생활 규정(두발규정 포함)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도 두발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두발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때 참여하는 자율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면, 아직도 문제가 되는 학교의 대부분이 자율의 주체로 학생과 학부모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단계에서 교육 3주체의 합의에 의해 자율규정 되었다하더라도 그 규정은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미 타율로 적용되는 규정이 되는 것이다.

자율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함”이라고 한다. 즉, 두발을 스스로의 의지로 규제해야 하는 학생들이 현재 두발규정의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발자율화의 교육적 필요성

우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공부만 열심히 배우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일상적인 생활이 교육적이기를 바란다. 친구와의 우정, 스승에 대한 존경, 소속 학교에 대한 애정,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등등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자질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스스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힘, 즉, 두발자율화를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두발자율화라는 주제를 갖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설령 그 결정이 본인의 뜻과 다르더라도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배우기를 바라고, 또 그 결정을 위반했을 때(즉, 문제 발생시) 받아야 할 지탄과 처벌, 혹은 관용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비리에 대한 비판의식과 책임감을 배우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제 이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만한 학생활동은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학교 내에 설치된 학생회는 명목적인 운영에 그치며, 학생회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도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의결사항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논리의 비약이 되겠지만 이렇게 학교 정책 및 교육 정책 전반에서 학생의 의

사 결정권이 배재되어 있는 현실이 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발자유화는 그들의 불만을 대신한 최소한의 권리주장인 셈이다.

두발관련 학교생활 규정 및 두발단속 방식의 문제

실제 학교의 두발규정이 어떤 내용인지를 찾아보았다.

아래는 서울에 위치한 한 중학교의 두발규정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다른 학교의 규정 내용도 별반 다를 바 없고, 다만 남학생의 앞머리 길이가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3-5cm). 이런 규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결정을 교육의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했다. 규정의 내용보다는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1. 남학생 : 가. 짧고 단정한 머리 - 앞머리 7cm
나. 앞·뒤·옆머리가 길거나 불량스러운 모양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여학생 : 가. 단정한 커트형, 단발머리, 묶는 머리 중 선택
나. 단발머리, 커트형 머리의 경우 - 귀밑 10cm 이하
다. 묶는 머리의 경우 귀밑에서 전체를 하나로 묶으며, 묶은 후의 길이가 15cm 이하
라. 불량스런 머리 모양이나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 남·여학생 모두 무스·스프레이 등 헤어 고정용 제품, 염색, 파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4. 남·여학생 모두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모자를 착용할 경우엔 본교 소정 양식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머리흉터 및 수술 나. 대외적인 문예활동
다. 기타 정당한 사유

한편 실제 두발규정의 결정사항 못지않게 학생들의 불만이 큰 것은 단속과 처벌방식이다. 2000년이나 이번의 두발자유화 논란도 결국은 비교육적인 단속과 처벌의 결과 초래된 것임은 잘 알고 있다. 설사 현재의 두발규정에 큰 거부감이 없는 학생들조차 단속과 처벌의 비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불만을 터트린다. 대부분 두발불량을 적발한 교사 임의로 구타는 물론, 소위 ‘고속도로’를 내는 식의 비인간적인 처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심한 경우 학교 규정에 “월장 및 흡연 등의 학칙위반의 경우에는 1)항의 규정(두발규정)과는 별도로 머리를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삭발 또는 스포츠형으로 자른다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학생의 두발을 엄한 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생생활 규정에는 선도(즉, 처벌규정)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선도의 목적과 원칙은 예외 없이 “학생의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과연 얼마나 지켜지면서 학생들을 단속하고 처벌했는지 궁금하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육의 목적중의 하나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이나 룰을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사나 학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진, 즉 자기가 경험한 세대의 개념으로 사회화를 인식해서, 이를 종종 학생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갈등이 생겨난다. “학창시절 바리깡으로 고속도로 난 것도 다 지나면 추억이야”라는 어른들의 말을 학생들이 추억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추억이지만 당시는 분노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획일과 순종이 미덕인 시대의 가치관을 창조와 자율이 강조되는 요즘 문화

에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최대한의 자유 안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틀을 만들어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내고, 학교와 사회는 학생을 실시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해서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머리모양 자유와 그 제한의 헌법적 근거

송병춘 (법무법인 한벗 · 변호사)

머리모양의 자유와 그 제한의 헌법적 근거

송 병 준 (법무법인 한벗·변호사)

1. 머리모양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제1.

자기결정권 -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타인, 특히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것.

즉, 헌법 제 10조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를 두고 있음.

제2.

외모, 복장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특정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신념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 삭발, 머리를 푸는 것

표현의 자유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머리모양 제한의 법적 근거

가. 머리모양 제한은 교사의 교육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견해.

교사의 교육권은 부모의 양육권이 위탁된 것임.

* 부모의 자에 대한 양육권

헌법 제36조 제1항 “결혼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나. 일반적 법률유보 :

헌법 제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1. 목적상의 한계

제2. 형식상의 한계

제3. 과잉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 즉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한가?

수단의 적합성 -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인가?

침해의 최소성 -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한정되어야 한다(가능한 완화된 방법).

법익의 균형성 - 그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4. 이중기준의 원칙

정신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령, 처분에 대해서는 그 합헌성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머리모양의 자유가 단순한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보다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경우, 그 제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예) 사전검열의 금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3. 머리모양을 제한하는 학칙의 법적 근거

-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가. 학생 징계와 관한 규정(선도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그 근거가 있으나, 두발·용모·복장등에 대한 제한의 근거 규정(용의·복장규정)은 없음.

나.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제1항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 동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라.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는 영조물이용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서 머리모양을 비롯한 기본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라고는 할 수 없음.

마. 청소년보호법 - 유해시설이나 마약등 유해물질에의 접근금지.

4. 교육적 필요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 머리모양 제한을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교육적 필요라는 관점에서 그 제한이 가능한가 하는 점.

나. 헌법 제36조 부모의 자에 대한 양육권 - 교사의 교육권

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의 이념)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5.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가. 단정한 외모, 복장 자체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 - 단정, 소박한 외모와

복장은 정의적 측면에서 안정된 성품의 표현이자, 그러한 바람직한 성향을 자아내게 하는 조건이 된다. ○

나. 학습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 - 학생의 관심과 신경이 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다. 생활지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 - 미성년인 학생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거리에서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것을 규제하기에 편리하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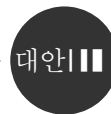
라. 타 학생의 권리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가 - 염색, 장발, 삭발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타인의 건강(불결함?)과 안전(실험실 등에서 화재위험?)을 해친다. X

* 판례

1960~70년대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사회적으로 장발이 유행하면서 많은 판례가 양산되었음.

- 머리칼 길이와 위생습관 X
- 수업중 주의산만 X
- 싸움, 실험실에서의 안전 위협 X
- 단정한 외모와 복장은 장래 고용주들에게 학교와 학생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 취업기회 확대. ○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학생 두발과 인권

박 교 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연구사)

학생 두발과 인권

박 교 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연구사)

▣ 교육부의 생활지도 방향

시대와 사회에 따라 문화와 사람들의 사고 및 요구 등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입장간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권의 개념과 존중 및 보호의 범위 등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사회 각계의 시각과 의견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이나 사고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변화를 외면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교육기본법 제12조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는 조항이 있듯이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개념과 내용은 매우 유동적이나 대체적으로 인권이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天賦的), 생래적(生來的), 불가양적(不可讓的)인 권리라는 개념으로, 인권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성별, 인종별, 계급별,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적으로도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교원과 학생의 인권이 보호·존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우리 부는 2003년부터는 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한 후 시행하며, 비교육적인 생활지도 방법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생활규정 개정 현황 : 전체 학교의 54.8%('03) → 65.48%('04)

▣ 두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우리 부는 2000년부터 학생의 두발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별로 교사·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두발의 자율화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지도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학생들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지도방법 등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의 미흡,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애매모호한 규정, 비교육적인 두발지도 방법 등으로 일부 학생 등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부는 학생·학부모·교원들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게 하는 한편, 비합리적으로 제·개정된 경우나 비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고 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은 존중하고 보호하되, 아울러 학생들의 책임의식 및 규정과 질서를 준수하는 의식 또한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